## 2025년 화성예술의전당 매표소 지원인력 채용

# 최종합격자 공고

2025년 화성예술의전당 매표소 지원인력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2025. 10. 31.

##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

## 1. 최종합격자 명단

채 <del>용분</del> 야	연번	응시번호	휴대전화 뒤 4자리
매표소 지원인력	1	2025-302	8528
	2	2025-304	6615
	3	2025-307	5883
	4	2025-308	0958
	5	2025-309	4301
	6	2025-311	8776
	7	2025-319	1550
	8	2025-320	4154
	9	2025-321	9884
	10	2025-322	7490

## 2. 예비합격자 명단

채 <del>용분</del> 야	연번	응시번호	휴대전화 뒤 4자리
매표소 지원인력	1	2025-313	9739
	2	2025-315	9745
	3	2025-316	5919

※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

#### 3. 임용후보자 등록

가. 등록기간 : 2025. 11. 3.(월) ~ 11. 5.(수) 18:00 까지

나. 등록장소: 예술의전당본부 사무실 (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1 자라뫼공원방문자센터)

다. 등록방법 : 방문제출

라. 제출서류 \* 첨부 문서를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

- 1) 신분증 사본 1부
- 2) 통장 사본 1부
- 3)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
- 4) 응시자격 결격사유 서약서 1부
- 5) 공정채용 확인서 1부
- 6)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
- 7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- 마. 임용예정일 : 2025. 11. 20.(목) \* 팀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4. 기타사항

- 가. 최종합격자는 등록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, 기일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대상자 등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임용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방문하지 않을 때에는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에서 제외됨
- 나. 추후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용에서 제외됨
- 다. 이의제기 신청
  - 1) 채용관련 비리, 부정행위,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,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(합격자 발표일 포함) 이의제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(sve0714@hcf.or.kr)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
  - 2) 이의제기 신청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[열린마당-정보공개-기타공개] 게시판 참고
- 라. 채용서류반환 :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하나, 전자우편제출의 경우 비해당

###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-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## 5. 문 의: (재)화성시문화관광재단 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(031-374-2674)